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39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박지혜·이주희·서왕진
서영교·안도걸·조인철
정혜경·김남근·진성준
이용우·권향엽·최민희
박지원·최혁진·고민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군

- 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u> 」 제2조제2호에 <u>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u> <u>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u> <u>획에 관한 사항</u>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